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1. 8. 22.

제안자 : 유주열 의원의외

1. 수정이유

같은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업무성격에 맞지않는 자치행정과의 명칭변경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 기획조정실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부칙 제2조 제11항 중 자치행정과 명칭변경 부분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 부칙 제2조 제12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중 개정안을 삭제하며,
- 부칙 제2조 제25항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중 개정안을 삭제하고,
- 부칙 제2조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충청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 제2조 제2항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신설함.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 제11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 제25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생략)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⑩(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⑩(생략)
<p>⑪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제5 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 장”으로 한다.</p> <p>⑫ 충청북도제2의건축법국민추진위원 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p> <p>⑬~⑭ (생략)</p> <p>⑮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 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9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p> <p>⑯ (신설)</p>	<p>⑪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p> <p>⑫ (삭제)</p> <p>⑬~⑭ (생략)</p> <p>⑮ (삭제)</p> <p>⑯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p>